

PA/PTA 임원 여러분께:

여러분께서는 2011년 5월에 실시될 CEC 및 뉴욕시 교육위원회 선거에 관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. 최근 개정된 규정에 의거하여, 이제는 현 PA/PTA 회장 및 임원들도 CEC 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CEC 또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 출마하는 PA/PTA 회장, 회계, 서기는 이들 위원회의 선거 과정에서 학부모 선거인단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다음은 학부모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설명입니다:

1. CEC 또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 입후보 하지 않은 PA/PTA 회장, 회계 및 서기.
 - 이러한 임원들은 5월에 있을 CEC 및 뉴욕시 교육위원회 선거에서 학부모 선거인단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2. 공동적이 아닌 단독 PA/PTA 회장, 회계 또는 서기로서 CEC 또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 입후보한 임원의 경우.
 - 해당 PA/PTA에서는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CEC 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 출마하지 않은 후보 중에서 출마한 후보를 대신 하여 학부모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임원을 결정해야 합니다. 이 경우, 해당 PA/PTA에서는 반드시 2011년 5월 1일까지 학부모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선출된 개인(들)의 이름을 다음 주소로 통보해야 합니다:

*The Office for Family Information and Action
49 Chambers Street, NYC 503
New York, NY 10007*

3. 공동적이 있는 PA/PTA (공동회장, 공동 회계, 공동서기 등)에서 공동직을 맡은 임원 중 한 명이 CEC 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 출마한 경우.
 - 출마하지 않은 나머지 한 명의 공동직 임원이 자동적으로 학부모 선거인단에 참여하게 됩니다.
4. 공동적이 있는 PA/PTA(공동회장, 공동 회계, 공동서기 등)에서 공동직을 맡은 임원 둘 다 CEC 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 출마한 경우.
 - 해당 PA/PTA에서는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CEC 나 뉴욕시 교육위원회에 출마하지 않은 후보 중에서 출마한 후보를 대신 하여 학부모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임원을 결정해야 합니다. 이 경우, 해당 PA/PTA에서는 반드시 2011년 5월 1일까지 학부모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선출된 개인(들)의 이름을 위의 주소로 통보해야 합니다.